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10. 19. 행 정 재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9. 14. 양옥희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1. 10. 6.

다. 상정일자: 2021. 10. 14.

(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양옥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(안 제2조~제3조)
- 다.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(안 제4조)
- 라. 우선구매 촉진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~제6조)

마. 홍보 및 표창 등(안 제7조~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독서문화진흥법」, 「중소기업기본법」,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협조부서: 문화체육과

다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라. 입법예고: 2021. 9. 30. ~ 10. 5.

5.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

가. 조례제정 취지

○ 본 제정안은 성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8개의 조무으로 구성됨

나, 조문별 검토내용

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
 - 본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, 적용범위를 기술하였고
- 안 제4조에서는
 -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
-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

- 협동조합과의 우선구매 계약 및 구청장의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 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
 -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
 - 1995년 미국 아마존이 인터넷서점을 처음 만든 이후 인터넷 발달에 따른 독자의 소비패턴, 라이프스타일과 학습방법의 변화 등 수없이 많은 외부변수가 지역서점을 위협하고 있어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지역서점을 살리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
 - 2021년 10월 현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7개 구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 등 소상공인 우선 지원에 대한 규정을 6개 구가 명시함
 - 이에, 안 제2조에서 구청장에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·시행 하도록 하였음
 - 안 제5조에서는 도서 구매 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 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 서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

또한, 안 제6조에서 도서관, 출판업계, 작가단체 및 지역서점 관련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판단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도서구매자의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변화됨에 따라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늘고 있는 반면, 지역서점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서점이 단순 도서를 판매하는 곳을 넘어 동아리 지원, 지역축 제 연계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확장적 으로 지역주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시의적절한 조례 안이라 사료됨
- 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
- **7. 토론요지:** 없음
- 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